

I

설립근거

□ 민법 제32조(비영리 법인 설립과 허가)

·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 설립과 허가
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한 법인 설립근거

-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
 - 2015. 05. 29. 조례 제4003호 제정
 - 2016. 09. 30. 조례 제4322호 개정
 - 2022. 10. 21. 조례 제5132호 개정
 - 2023. 06. 09. 조례 제5276호 개정
 - 2023. 12. 08. 조례 제5399호 개정

II

설립목적

· 전북국제협력진흥원 [정관 제2조]
본 진흥원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의 여러 도시와 국제교류를 폭넓게 추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민의 국제이해 증진과 외국인 거주 여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III

연혁

- 2015. 05. 29. (재)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
- 2015. 08. 06. 국제교류센터 설립허가
- 2015. 11. 03. 국제교류센터 개소식
- 2017. 09. 28. 국제교류센터 조직개편
- 2018. 01. 16. 국제교류센터 이전 개소식
- 2018. 12. 21. 국제교류센터 조직개편
- 2023. 06. 09. 기관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
- 2024. 01. 08. 외국인 정책실(T/F) 임시조직 운영
- 2024. 08. 01.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

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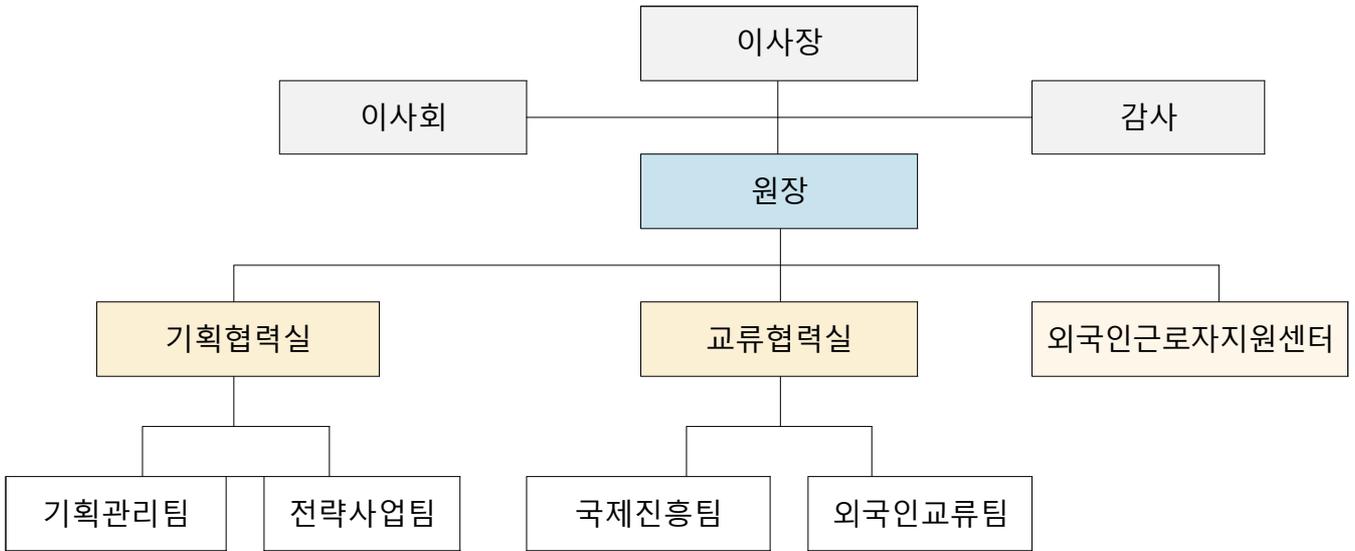
주요사업

· 전북국제협력진흥원 [정관 제4조]

1. 국제 민간교류 지원 사업
2.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
3.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사업
4. 기타 국제협력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V

조직도



VI

시설현황



사무실



교육장



회의실



우리(URI)글로벌라운지

VII

정·현원 현황

구 분	합 계	직 급 별(단위 : 명)					
		원장	실장	팀장	차장	대리	주임
정 원	22	1	2	4	6	6	3
현 원	21	1	1	4	2	4	9